

# 이천시 농·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 운영 규정

소관부서 : 농업기술센터(농업정책과)

제정 1996· 3· 1 훈령 제39호  
일부개정 2019· 1· 1 훈령 제274호  
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농축수산물의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산조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농축산물의 품목별 수급계획을 감안한 생산조정 협의
2. 농축수산물의 생산지원자금, 유통지원자금, 기타 각종 출하조정자금의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
3. 농축수산물의 수매량 배정, 수매자금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
4. 농축수산물의 공동출하, 규격출하 지원에 관한 사항
5. 농축수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주요 농축수산물의 유통개선, 자금지원, 사업실시방안 등에 관한 사항

② 아래품목의 생산, 출하 및 수매에 관한 조정은 반드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고추 2. 마늘 3. 양파 4. 무 5. 배추 6. 참깨 7. 땅콩 8. 소 9. 돼지

**제3조(구성)**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시는 15인내외, 읍·면은 12인내외로 하되 간사는 농협을 포함, 각과의 기능에 의하여 시는 2명, 읍·면은 1명을 둔다.

② 의장은 시는 시장, 읍·면은 읍·면장이 되고, 부의장은 시는 농협지부장 읍·면은 농협단위조합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. <개정 2019·1·1>

(시 단위)

1. 농업정책과장

2. 농촌지도소 기술지도담당관
3. 통계출장소장
4. 농·축협 조합장 각 1명
5. 농민대표(협동출하반장, 영농회장 7인이내)

(읍·면 단위)

1. 산업담당주사
2. 단협영농부장
3. 농촌지도소 담당지도사
4. 농민대표(협동출하반장, 영농회장 7인이내)

③ 간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(시 단위)

1. 농지관리(축산, 특작)담당주사
2. 농협유통담당차장

(읍·면담당)

1. 단위농협 영농부장

**제4조(임무)** ① 의장은 회의를 주재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.

② 부회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비치관리한다.

**제5조(회의소집 및 의결)** ①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이상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결권을 가진다.

**제6조(실무위원회)** ① 협의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는 간사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는 농업정책과장, 읍·면은 산업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시는 업무주관담당주사, 읍·면은 업무담당자

가 된다. <개정 2019·1·1>

③ 위원은 아래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9·1·1>

(시 단위)

1. 농업정책과장
2. 농촌유통담당 차장
3. 농촌지도소 기술지도담당관
4. 통계출장소장
5. 농축협조합장 각1인
6. 농민대표(협동출하반장, 영농회장 7인이내)

(읍·면 단위)

1. 산업담당주사
2. 단협영농부장
3. 농촌지도소 읍·면담당주사
4. 농민대표(협동출하반장, 영농회장등 7인이내)

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7조(위원의 대우수당)**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 및 여행을 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1·1 훈령 제274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① 내지 ⑭ 생략

⑮ 「이천시 농·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 운영 규정」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“농정과장”을 각각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⑯ 및 ⑰ 생략